

## 2023년도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라 2023년도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면제서류 접수·심사	원서접수 (2·3차 동시접수)	시험장소 공 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험	2. 13.(월) 09:00 ~ 2. 24.(금) 16:00	(정기접수) [5일간] 2. 20.(월) 09:00 ~ 2. 24.(금) 18:00  (빈자리접수) [2일간] ※선착순, 환불불가 3. 23.(목) 09:00 ~ 3. 24.(금)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4. 1.(토)	5. 3.(수)
제2차 시험	[10일간, 토·일 제외]	(정기접수) [5일간] 5. 22.(월) 09:00 ~ 5. 26.(금)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6. 17.(토)	7. 26.(수)
제3차 시험		(빈자리접수) [2일간] ※선착순, 환불불가 6. 8.(목) 09:00 ~ 6. 9.(금) 18:00	8. 2.(수) 공고예정		8. 18.(금)~ 8. 19.(토)	9. 20.(수)

- ※ 증빙서류 제출·심사 후에 시험의 일부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
-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 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 정기접수 마감일 13:00~18:00 및 빈자리접수 기간 중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 빈자리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

##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가.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제1차 시 험	공통필수 (3과목)	① 공통필수 I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      ② 공통필수 II (산업안전일반)
		산업보건      ② 공통필수 II (산업위생일반)
		③ 공통필수 III (기업 진단·지도)
제2차 시 험	전공필수 (택1)	산업안전      ▪ 기계안전공학 ▪ 전기안전공학 ▪ 화공안전공학 ▪ 건설안전공학
		산업보건      ▪ 직업환경의학 ▪ 산업위생공학
제3차 시 험	공통필수 (면접)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정도 ▪ 상담·지도 능력

### 나. 시험시간

구분	시 험 과 목	입실	시 험 시 간
제1차 시 험	① 공통필수 I ② 공통필수 II ③ 공통필수 III	09:00	09:30 ~ 11:00 (90분)
제2차 시 험	▪ 전공필수	09:00	09:30 ~ 11:10 (100분)
제3차 시 험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정도 ▪ 상담·지도 능력		수험자 1명당 20분 내외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3. 시험방법

- 가.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택일형(과목당 25문항)
- 나. 제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및 단답형
-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없음

- 단, 지도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

나. 지도사 등록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시험의 일부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

-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 II 과목  
 ※ 인간공학기술사는 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 II 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 (제2차 시험)는 반드시 응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 II 과목
4. 공학(건설안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 II 과목

※ 산업안전·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 ① 안전·보건 관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
-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지도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지정서로 확인)
- ③ 기업체에서 실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 품질·환경 업무, 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 기간은 제외하고, 경력증명서상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I 과목
7.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 III 과목

8.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I, 공통필수 II 및 공통필수 III 과목

※ '별표32'는 붙임 참조

나. 제1차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 경력 및 면제요건 산정 기준일 : 서류심사 마감일(2023. 2. 24.(금))

## 6. 합격자 결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5조)

### ○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 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7.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 제1차 시험

- 정기 원서접수 : '23. 2. 20.(월) 09:00 ~ 2. 24.(금) 18:00 [5일간]
- 빈자리 원서접수 : '23. 3. 23.(목) 09:00 ~ 3. 24.(금) 18:00 [2일간]

#### ○ 제2·3차 시험(동시접수)

- 정기 원서접수 : '23. 5. 22.(월) 09:00 ~ 5. 26.(금) 18:00 [5일간]
- 빈자리 원서접수 : '23. 6. 8.(목) 09:00 ~ 6. 9.(금) 18:00 [2일간]

※ 시험 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 : '23. 2. 13.(월) 09:00 ~ 2. 24.(금) 16:00 [토, 일 제외]

※ 시험의 일부면제자는 제출된 서류가 승인된(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후 원서 접수 진행 (승인 전, 원서접수 시 일반응시자로 접수 됨)

※ 빈자리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

## 나. 접수방법

○ Q-Net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여야 함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접수도우미 운영

## 다. 수수료 납부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응시수수료 : (1차) 55,000원, (2·3차) 75,000원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 시간까지 미 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은 가상계좌 이용 불가

## 라. 수수료 환불

○ 환불 방법

- 환불은 큐넷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원할 시에는 큐넷 메인 홈페이지 자료실 ⇨ 각종 서식에서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

구분	환 불 기 준
100%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60% 환불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구분	환 불 기 준
50% 환불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 불가	•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 시험 결시자
사후환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li> <li>•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li> <li>•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발급한 확인서 첨부)</li> <li>•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li> <li>•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재난문자, 경찰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li> </ul>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b>시행기관의 사정</b> 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b>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b>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 수험원서 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은 **인터넷(큐넷)**으로만 가능
- ※ 제3차 시험은 동시접수로 진행되므로, 환불기간은 제2차 시험 환불기간과 동일
- ※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취소·환불 불가**

## 마. 시험시행기관

기관명	구분	주소	우편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1·2·3차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자격시험3부	02-2137-0558
부산지역본부	1차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46519	자격시험3부	051-330-1916
대구지역본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자격시험1부	053-580-2384
광주지역본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61008	자격시험1부	062-970-1772
대전지역본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35000	자격시험1부	042-580-9155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바.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 「SMART Q-Finder」 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사.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 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 아. 수험자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 또는 응시편의제공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 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 증빙서류 미제출시,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사항은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참고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자.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b>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b>					
편의제공 대상	편의구분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제출서류	
시각 장애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시험시간 1.5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문제인지 방법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 문제지 - 확대 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문제지대독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확대 답안지 - 점자 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 상기 항목 중 택1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문제인지 방법	- 확대 문제지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답안작성 방법	- 확대 답안지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 격 조정)	-	

편의제공 대상		편의구분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제출서류
지체 장애	(1) 상지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2) 상지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2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3) 하지(장애정도 구분 없음, 척추장애* 포함)	시험시간	- 일반 수험자와 동일	- 시험시간 1.1배 연장 ※ 단 시험 중 이동이 있거나 서서 작업하는 종목에 한정	①,②,③호 중 하나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지체 장애	(4) 복합장애 [상지+하지]	시험시간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1) 또는 (2)의 장애정도에 부여한 시간 + (3)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
답안작성 방법 및 기타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청각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별도시험실 배정	①,②,③호 중 하나	
신장 심장 정류요류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①,②,③호 중 하나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 자	일시적 신체장애	편의제공 사항 전반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④호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임신부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④,⑤호 중 하나

※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제출서류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애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
- 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불인정, 유효기간 필요) 원본 1부.
- ⑤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① +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  
⇒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3}=78분]  
+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60분\*0.1)=6분] = 84분

## 8.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가. 공개 및 의견제시 기간

- 제1차 시험 : 2023. 4. 1.(토) 14:00 ~ 4. 7.(금) 18:00 [7일간]
- 제2·3차 시험 : 해당없음

### 나. 공개 및 제시방법

- 큐넷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같음

## 9. 합격자 발표 및 시험합격 확인서 발급

### 가. 합격자 발표 일시

- 제1차 시험 : 2023. 5. 3.(수) 09:00
- 제2차 시험 : 2023. 7. 26.(수) 09:00
- 제3차 시험 : 2023. 9. 20.(수) 09:00

### 나. 합격자 발표 방법

- 큐넷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홈페이지 [60일간]
- 자동안내전화(ARS) : 1666-0100 [4일간], 유료

### 다. 합격확인서 발급

- 발급대상 : 제1·2·3차 시험 합격자
- 발급방법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큐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 확인서 발급 - 신청·발급
- 발급기간 : 합격자 발표일부터 계속

### 라. 지도사 등록 신청

- 신청기관 : 주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지역(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1부, 이력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만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제1항 “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0. 수험자 유의사항

### 【 제1·2·3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인정범위 :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정부24·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부서관·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② NEIS 재학증명서(사진(컬러)·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시험시간의 1/2 경과 후 퇴실할 수 있습니다.

※ 단, 배탈·설사 등 긴급한 상황으로 시험포기 없이 시험 중에 퇴실하려는 자는 퇴실 가능하지만, 해당 교시에 재입실은 불가하고 시험시간 1/2 결과 전까지 시험 본부에 대기(퇴실 전 작성한 답안까지 인정)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

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접수 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 정해진 규정 이외에는 환불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16. 응시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산업안전·산업보건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의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 편의 제공 대상 수험자는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 편의 제공 불가)

### 【 제1차 시험 객관식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은 큐넷 산업안전·산업보건지도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착오 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 제2차 시험 주관식 수험자 유의사항 】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제3차(면접)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자는 일시·장소 및 입실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2. 소속회사 근무복, 군복, 교복 등 제복(유니폼)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

★ 산업안전·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자 유의사항은 원서접수 후 수험표 출력 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2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

구분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기계안전 분야	전기안전 분야	화공안전 분야	건설안전 분야	직업환경의학 분야	산업위생 분야	
전공필수	과목	기계안전공학	전기안전공학	화공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공학
	시험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등(위험기계·양중기·운반기계·압력용기 포함)</li> <li>- 공장자동화설비의 안전기술 등</li> <li>- 기계·기구·설비의 설계·배치·보수·유지기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등(전기방폭설비 포함)</li> <li>-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예방 등</li> <li>- 감전사고 방지기술 등</li> <li>- 컴퓨터·계측제어 설비의 설계 및 관리기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방화 및 방폭설비 등, 화학장치·설비안전 및 방식기술 등</li> <li>- 정성·정량적 위험성평가, 위험물누출·확산 및 피해 예측 등</li> <li>- 유해위험물질 화재폭발방지론, 화학공정 안전관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용 가설구조물·기계·기구 등의 안전기술 등</li> <li>- 건설공법 및 시공방법에 대한 위험성평가 등</li> <li>- 추락·낙하·붕괴·폭발 등 재해요인별 안전대책 등</li> <li>-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기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병의 종류 및 인체 발병경로, 직업병의 증상판단 및 대책 등</li> <li>- 역학조사의 연구방법, 조사 및 분석방법, 직종별 직업환경의학적 관리대책 등</li> <li>-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 판정 및 사후관리대책 등</li> <li>-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 업무무상 질환의 대책 및 작업관리방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환경설비의 설계, 시스템의 성능검사·유지관리기술 등</li> <li>-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측정 방법, 산업위생통계처리 및 해석, 공학적대책 수립기술 등</li> <li>- 유해인자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대사 및 축적, 인체의 방어기전 등</li> <li>- 측정시료의 전처리 및 분석 방법, 기기 분석 및 정도관리기술 등</li> </ul>
공통필수 I	산업안전보건법령						
시험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통필수 II	산업안전 일반				산업위생 일반		
시험범위	산업안전교육론,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신뢰성공학, 시스템안전공학, 인간공학,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산업위생개론, 작업관리, 산업위생보호구,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공통 필수Ⅲ	기업진단·지도	
시험 범위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위생개론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안전개론